

2026 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 조(이용 계약 내용) 이용계약의 세부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한다.
2.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이용계약서 :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작성하며, 계약서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계약 당사자 책임 :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은 서비스 종료 후 30 일 이내 계좌로 송금 지불한다.

제 14 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을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개정 2021.12.21)
2.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수가와 등급별 한도액을 매년 1 월에 전 직원 및 수급대상자에게 문서,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수급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 가. 일반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다.
 - 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인 무료이다.
 - 다.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를 적용한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
 -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나. 그 밖의 비급여의 비용 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2026 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안내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2) 방문요양 (방문 당 금액 : 원)

30 분 이상	60 분 이상	90 분 이상	120 분 이상	150 분 이상	180 분 이상	210 분 이상	240 분 이상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3) 방문목욕 (방문 당 금액 : 원)

방문목욕 차량(차량 내) 이용	방문목욕 차량(가정 내) 이용	목욕 차량 미이용
88,990	80,230	50,100

제 15 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근무 합의서에 아래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대상자 또는 보호자(그 가족)가 책임 이행에 동의해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근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근무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사전에 상호 예방하도록 하며, 사고 발생시 센터와 협의하되 책임은 묻지 않는다.
5.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근무제공 업무외 서비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6.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근무제공자인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기록지의 확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수급대상자와 함께 본인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수급대상자의 편의 사항을 업무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수급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 2) 수급대상자가 서비스 근무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이용대상자의 서비스 근무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 받았을 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이 있을시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 16 조(계약 해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 규칙 미 준수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 야기 또는 계약 파기를 요구할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 야기 등, 관련규정의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 근무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계약을 중단 또는 해지한다.
2. 이용자가 요양보호사 직무외의 서비스 근무 요구나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심의결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운영규정 문구는 좋은이웃재가장기요양센터 운영규정 제 13 조~제 16 조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2026 년 수가표만 해당 연도 고시 기준으로 별도 표시하였습니다.